

내화구조의 성능기준(제3조제8호 관련)

1. 일반기준

(단위 : 시간)

구 성 부 재 용 도				벽						보 · 기둥	바닥	지붕 · 지붕틀
				외벽			내벽					
				내 력 벽	비내력벽		내 력 벽	비내력벽				
연소우려 가 있는 부분	연소우려 가 없는 부분	경계벽	승강기 · 계단 실의 수직벽									
용도구분		용도규모 층수／최고 높이(m)										
일 반 시 설	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중 교시설, 판매시설, 운 수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위락시설, 자동차 관 련 시설(정비공장 제 외),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, 교정 및 군 사 시설, 방송통신시 설, 발전시설, 묘지 관련 시설, 관광 휴게 시설, 장례시설	12/50	초 과	3	1	0.5	3	2	2	3	2	1
			이 하	2	1	0.5	2	1.5	1.5	2	2	0.5
		4/20 이하	1	1	0.5	1	1	1	1	1	1	1
주 거 시 설	단독주택, 공동주 택, 숙박시설, 의료 시설	12/50	초 과	2	1	0.5	2	2	2	3	2	1
			이 하	2	1	0.5	2	1	1	2	2	0.5
		4/20 이하	1	1	0.5	1	1	1	1	1	1	0.5
산 업 시 설	공장, 창고시설, 위 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, 자원순환 관련 시설	12/50	초 과	2	1.5	0.5	2	1.5	1.5	3	2	1
			이 하	2	1	0.5	2	1	1	2	2	0.5
		4/20 이하	1	1	0.5	1	1	1	1	1	1	0.5

2. 적용기준

가. 용도

1)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

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.

- 2)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따른 구성 부재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3) 용도규모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에 따른다. 다만, 승강기탑, 계단탑, 망루, 장식탑,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.

나. 구성 부재

- 1)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말한다.
- 2)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.
- 3) 내벽 중 비내력벽인 경계벽은 건축법령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벽을 말한다.

다. 그 밖의 기준

- 1)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·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2)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.